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이용계약기간 및 계약의 해지

1) 계약기간

-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인정서의 만료일로 한다.
- ②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④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 ⑤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⑥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⑦ 보호자 및 수급자의 사정에 의한 계약 해지 요청 시(타 서비스 이용, 이사, 보호자 요청 등)
- ⑧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3. 이용자 관리

정기적으로 내방상담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관리를 실시한다.(사망, 타기관이용 등의 경우 관리 제외)

4.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 1) 급여제공원칙 :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와 수급자의 가족에게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2) 월 이용료 :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책정한다.

2025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 일반대상자 : 월 이용료의 15% ◦ 경감대상자 : 월 이용료의 6%, 9% ◦ 기초생활 수급권자 : 월 이용료의 0%				

- *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급여를 이용하는 만큼만 적용하며, 원거리교통비, 치매수당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월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말일까지를 1개월분의 월 한도액으로 적용한다.
- *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 *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하며, 월 한도액 초과 시 전액 수급자가 100% 비용 부담해야 한다.
- * 수급자가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다가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등에는 월 한도액에서 지급된 특별 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3) 급여종류별 이용료(방문요양)

구분	수가(1회당)	구분	수가(1회당)	구분	수가(1회당)
30분	16,940	120분	42,160	210분	61,670
60분	24,580	150분	49,460	240분	68,030
90분	33,120	180분	55,350		

- 심야가산 : 22시 이후 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한다.(단,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공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한다.
- 유급휴일가산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한다.
- 다만 위 가산이 중복될 때에는 중복하지 아니하고 높은 가산율만 적용한다.

4) 급여종류별 이용료(방문목욕/수가1회당)

- 방문목욕차량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 86,480 - 방문목욕차량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 77,970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60분 이상 : 48,690 (40분 이상 38,950)

- * 서비스 제공시간은 60분으로 제한되며, 장기요양등급 등에 관계없이 1회 방문 당 수가가 동일하게 산정됨

- *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함
- * 방문목욕차량 이용 시 수가는 이동목조, 호스 등 제반 장비가 모두 탑재된 특수차량을 이용하여 가정을 방문, 목욕서비스를 제공할 때 적용됨
- * 방문목욕차량 미 이용 시 수가는 이동목조, 목욕의자, 세면용품 등 목욕용 장비, 용품 등을 휴대하고 가정을 방문, 목욕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적용됨

5)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장기요양서비스 외 외부활동 등에 발생하는 교통비는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5. 서비스 내용

장기요양급여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영역 및 주요 기능상태,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수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를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일상생활·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서비스내용	세부내용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간단한 목욕도움,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등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가사지원, 개인활동 지원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등
기능회복훈련	-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 훈련, 일상생활동작 훈련, 정신기능 훈련, 기타재활치료 등
치매관리지원	- 행동변화 대처 등
응급서비스	- 응급상황 대처 등
업무기록 및 보고	- 요양보호사 업무일지 기록, 보고

2)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전반적인 목욕서비스를 제공

서비스내용	세부내용
방문목욕서비스 지원	- 목욕준비 - 목욕실시(몸씻기, 머리감기, 얼굴씻기 포함) -목욕 후 옷갈아입기 -배설처리
그 외 서비스 지원	- 사용물품 준비 및 뒷정리 -수급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시 도움
업무기록 및 보고	- 요양보호사 업무일지 기록(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측정 등)

3) 이용노인 가족에 대한 상담

6. 신원인수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신원인수의 의무와 권리는 아래와 같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 ① 기관으로부터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수급자가 제공받는 건강관리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한 정보를 설명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②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과 청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는 권리
- ④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⑤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할 수 있는 권리
- ⑥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⑦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서비스 종결을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②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④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의 의무사항을 숙지,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의무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
- ⑤ 타인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전염성 등의 질환 및 폭력성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센터에 알려야 할 의무
- ⑥ 5번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책임에 대한 의무
- ⑦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 ⑧ 수급자의 병원 인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의 부담에 관한 의무

7.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1) 계약기간 중 수급자의 상태변화나 장기요양인정 등급의 변동에 따른 급여제공 내용변경에 의해 급여비용을 변경한다.
- 2) 변경방법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수급자 욕구사정 후 서비스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이것을 수급자 및 보호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서비스의 변경을 한다.